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

송파구보

송파구 홈페이지 | www.songpa.go.kr

2017. 9. 28(목) 제1552호



※ 송파구보 발행 안내

· 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 게재합니다.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송파구 SONGPA-GU

발행인 : 송파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02-2147-2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차 례

◉조 례

제13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3
제13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138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9
제13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제138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 19
제13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 ····· 21
제13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138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제139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13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제139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제13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제139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제139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제139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고 시

제13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51
제13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54
제138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56

◉공 고

제1274호 송파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58
제1289호 부의안건공고 ····· 66
제129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67
제1292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69
제1293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78
제1295호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87
제1301호 부의안건공고 ····· 96

◉공 시

제133호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97
제134호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 99

조 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본문 중 “담당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담당주사가”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심의 결정”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심의결정”을 “심의·의결”로 하고, “시지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이하 "시지명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구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 ----------. 1. ------- 2. ---------- 사람 -------- 3. <삭제> ④ <삭제>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현 행	개 정 안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 --------- ----------, ----- 소관 업무 담당 과장-----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3. (생략)	**제7조(기능)** ---------- 심의·의결--.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 의결---------- ---------- ----------.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 심의·의결- ----------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파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원장은 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교부중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향토자료를 비롯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3.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발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문화원 지원·육성 업무 담당 부서장 및 문화원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1. 문화원 이사 중 1명
2. 송파구의회 구의원 중 1명
3. 관내 민간문화예술단체장 중 1명
4. 그밖에 지역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투명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모금계획
2. 전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별 기금의 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및 기금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검사 · 감독)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를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생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며,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생략)	**제6조(강사 위촉)** ① ----------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 6. (생략) ③ (생략)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생략)	**제10조(표창)**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인스

현 행	개 정 안
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생략) ② ~ ③ (생략)	포츠지도사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

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방안
3.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웹접근성의 인증) 구청장은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인된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구청장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가 지

정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 주민과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지원
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
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3. 공유 촉진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
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유단체 · 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지정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을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7(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① 송파구에 유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유치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
4.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비
2.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그 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④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7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7(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① 송파구에 유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유치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 4.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비 2.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그 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④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8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기회의 “연 2회” 개최를 “연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2. (생략)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5.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3.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 1회** -----, ----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15일 전까지 재위촉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② (생략)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위촉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청구기간			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				

수리내역

연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 유형	수급권자 여부	전화 번호	이동 기기 유형	수리 일자	수리 품목 (부품)	수리 비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 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불금을”을 “대지급금을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까지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급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급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1.~3. (생략)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환 받은 대불금 5.~6. (생략)	**제2조(기금의 재원)** 1.~3. (현행과 같음) 4. ---------- ---------- 대지급금 5.~6.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 재무관, ---------- ---------- ----------.
제6조(수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지출)** ① ---------- ---------- 대지급금을 ---------- 대지급금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① ---------- ---------- ---------- 대지급금을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현 행	개 정 안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의료급여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원 부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 부 하 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 부 하 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 불 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 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소관		
상환금내용	대 불 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6조'를 '제52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13조제2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3. "아동·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아동복지법」 제16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송파구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 7.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제52조 ---------- ----------.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제6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제4조(설치)** ---------- 제4조-- ----------.

현 행	개 정 안
한다)를 둔다.	
제11조(설치) 구청장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와「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별로 아동.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설치)** ---------- ---------- 제14조---------- ---------- ----------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생략)	**제1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가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품질인증농산물 다음에 "및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을 추가하고, 나목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마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3. (생략) 4. (생략)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생략)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사.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품질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바.~사.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대상) (생략) 1.~2. (생략)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생략)	**제9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어린이집 4. (현행과 같음)
제12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	**제12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어린

현 행	개 정 안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급식경비의 지원금을 우수한 농·축·수산물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이집---------- ---------- ----------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90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1조 ----------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⑤ (생략)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 ---------- ----------제91조----- ----------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 ---------- ---------- ---------- ---------- 제94조 ---- ----------. ② ---------- ---------- ---------- ---------- ------- ---------- ---------「지방세징수법」제33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39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이내
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

명 이내

제12조 중 “하나 해당하는 때”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2.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구의원 2명 이내 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3. (생략)	제12조(위원의 해촉)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 국외여행 ---------- ---------- 2.~3. (현행과 같음)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3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2-11외 11건

연번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02-2147-3065)에 문의 또는 송

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위 도로명주소는 2017. 9.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우편번호	고지대상	접수관리번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2-11 (석촌동)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611	고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9-8 (석촌동)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612	고지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2-1 (석촌동)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680	고지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33-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 3 (삼전동)	20100604	삼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593	고지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93-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3길 8-1 (문정동)	20100604	새말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802	고지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0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길 14-15 (문정동)	20100604	새말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801	고지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6-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3길 6 (문정동)	20150416	정의로에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방식 부여	05835	고지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4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29-19 (방이동)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633	고지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25길 27 (오금동)	20100604	문정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731	고지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가길 8-4 (오금동)	20100604	마천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05727	고지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88-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02 (마천동)	20100604	성내천을 따라가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05753	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3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 3외 12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02-2147-3065)에 문의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신청에 의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진행사항	신청인	신청구분	도로명 또는 건축물 소재지
18182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삼전로4길 3
18181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새말로13길 8-1
18180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삼전로4길 3-3
18179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삼전로3길 3
18178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백제고분로36길 2-1
18177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백제고분로33길 22-11
18176	20170919	20170919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백제고분로33길 29-8
18195	20170922	20170922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새말로15길 14-15
18194	20170922	20170922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백제고분로48길 29-19
18193	20170922	20170922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동남로23가길 8-4
18192	20170922	20170922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동남로23가길 8-6
18191	20170922	20170922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문정로25길 27
18190	20170922	20170922	작업완료	박종관	건물번호폐지(직권)	성내천로 2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38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2005.12.1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5호(2017.2.16.)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잠실4주구) 변경 결정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896)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419-435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일대

3. 정비구역의 면적 : 112,558.50㎡

4. 사업시행자

- 명 칭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반성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97, 지하1층(신천동, 새진주상가)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7. 9. 2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8.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연면적(㎡)	층 수	용 도
주택용지	101,151.30	17.86	276.70	101.35	457,488.76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구중심	2,878.50	49.98	247.12	22.85	13,850.21	지하3층/지상5층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주택형태	공급구분	동 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공동주택	계	19	2,636	60㎡미만	60㎡이상~85㎡이하	85㎡초과
	분 양	19	2,438	735	1,279	424
	임 대		198	198	-	-

10.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종 류	규 모(㎡)	시 행 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4,058.7	조 합	시행자, 설치비용(무상귀속)
공 원	4,470.0	조 합	시행자, 설치비용(무상귀속)

11. 의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5호, 제17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74호

송파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송파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신규위탁

연번	시 설 명(가칭)	소 재 지	정원 (예정)	반편성 (예정)	면적	개원 (예정)	비고
1	송파레미니스어린이집	오금동 99번지 보금자리주택 1단지	68	만0세~ 만5세	330.82	2018.4	
2	송파위례포레샤인어린이집	위례지구 A1-10BL 2305동 1층	95	만0세~ 만5세	585.92	2018.2	
3	다사랑어린이집	양산로8길 24, 211동 102호 (거여동, 거여2단지)	20	만0세~ 만2세	101.95	2018.4	가정형구립
4	온새미어린이집	송이로 88, 5동 107호 (가락동, 가락대림아파트)	20	만0세~ 만2세	113.08	2018.4	가정형구립
5	파크리오어린이집	올림픽로 435, 112동 102호 (신천동, 파크리오)	20	만0세~ 만2세	84.90	2018.3	가정형구립

○ 변경위탁

연번	시설명	소재지	보육현황	종사자현황	규모	비고
1	가락본동어린이집	송이로17길 46 (가락동)	정원 : 131명 ▸ 만1세 ~ 만5세	22명 ▸ 원 장 : 1명 ▸ 보육교사 :12명 ▸ 기 타 : 9명	678.42㎡ 지하1층 지상3층	
2	개롱어린이집	동남로 225(가락동, 레미안파크팰리스)	정원 : 28명 ▸ 만0세 ~ 만2세	7명 ▸ 원 장 : 1명 ▸ 보육교사 : 5명 ▸ 기 타 : 1명	133㎡ 지상1층	
3	솔이어린이집	양산로2길 44 (거여동, 거여3단지)	정원 : 38명 ▸ 만1세 ~ 만2세	10명 ▸ 원 장 : 1명 ▸ 보육교사 : 7명 ▸ 기 타 : 2명	170㎡ 지상1층	
4	파인7어린이집	충민로4길 19(장지동, 송파파인파운7단지)	정원 : 24명 ▸ 만0세 ~ 만2세	6명 ▸ 원 장 : 1명 ▸ 보육교사 : 4명 ▸ 기 타 : 1명	119㎡ 지상1층	

※ 중복지원 불가(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

※ 취약보육 2개 이상실시(주민의견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육수요 및 시설에 따라 연령별 정원 및 개원은 변경될 수 있음**

※ 개별 시설당 1개 단체 또는 1인(개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심의결과 평균 70점 미만이면 탈락 후 재모집 공고

2.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단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함

 (※ 국공립 원장 자격기준으로 시행령 별표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법인 및 단체(협동조합)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다.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바.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행정지도 및 명령은 제외)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설장 및 교직원

5.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야 함

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마.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바. 가정형구립어린이집 시설(20인 이하)의 원장은 보육교사(담임) 겸직하여야 함

사. 가정형구립어린이집 개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주민 동의절차 완료 후 개원 함

아. 법인, 단체의 경우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약정 체결일로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차.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송파구 어린이집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

6. 신청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9. 22. (금) ~ 10. 13. (금)

나. 접수기간 : 2017. 9. 29. (금) ~ 10. 13. (금) 18:00까지

다. 신청서배부 : 송파구청홈페이지(http://www.songpa.kr) 공고/공시 참조

라. 접수장소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본관 5층)

마.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바. 사업설명회 : 없음

사.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타 자치구 위탁체 공개모집 응모 사실 공개 - 수상 및 개인 표창기록 등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4부 /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작성, 색인지, 견출지 부착】

○ 요약서(3～5페이지분량) – 담당자 이메일(shower73@songpa.go.kr)로 제출

연번	구분	요약서 양식(작성 순서)	비고 (위탁서류 p.)
1	어린이집 운영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2		취약보육 운영계획	
3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4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5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6		특별활동 운영계획	
7		세입·세출예산서	
8	운영체 및 원장 전문성	평가인증 참여 여부	
9		원장의 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근무경력 - 총 년 월 (원장 : 년 월)	
10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부분)	
11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현황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현황	
12	운영체의 재정능력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1차 서류심사 통과된 위탁신청자에 한하여 PPT자료(3분 이내분량) 담당자 이메일(shower73@songpa. go. kr)로 제출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항목 :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대표 및 원장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35	45	10	5	5

나. 선정방법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모집 결정

8. 심의일시 및 발표

가. 심의일시 : 2017. 10. 27. (금) 예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나. 심의장소 : 송파구청 3층 대회의실

다. 발표내용 : 신청서류 설명, 운영 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발표 시간은 3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라. 발표자 :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마.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송파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함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다.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2147-2785)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89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행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9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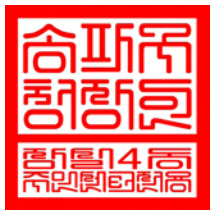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및 인증기 불용 처리

2. 공인등록 내역(총 4건)

(단위 : 센티미터)

구분	신조공인명	서체 및 규격(cm)	최초사용일	수량	공인 인영	비고
등록	송파구청장인 (잠실4동주민센터전용) [종직인]	한글전서체 (2.7×2.7)	2017.10.13.	1		

구분	신조공인명	서체 및 규격(cm)	최초사용일	수량	공인 인영	비고
등록	송파구청장인 (잠실4동주민센터전용) [횡직인]	한글전서체 (2.7×2.7)	2017.10.13.	1		
등록	잠실4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종직인]	한글전서체 (2.1×2.1)	2017.10.13.	1		
등록	잠실4동장인 (민원사무용) [횡직인]	한글전서체 (2.1×2.1)	2017.10.13.	1		

3. 공인폐기 내역(총 2건)

구분	신조공인명	서체 및 규격(cm)	폐기일자	수량	공인 인영	비고
폐기	송파구청장인 (잠실4동주민센터전용) [종직인]	한글전서체 (2.7×2.7)	2017. 9. 20.	1		
폐기	잠실4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종직인]	한글전서체 (2.1×2.1)	2017. 9. 20.	1		

4. 공 고 기 간 : 2017. 9. 28. ~ 10.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92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에 대하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한[송파구 공고 제2015-1709호(2015.12.10.)] 내용이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7.09.06.)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 09. 28. ~ 2017. 10. 3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896)
삼환가락아파트 관리사무소(☏02-6486-8798)
가락2동 주민센터(☏02-2147-4480)

다. 공람사유 :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축배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사업시행인가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로 432 (가락동 176번지)	-	증) 40,749.2	40,749.2	

3. 정비사업의 계획(안)

가. 용도지역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749.2	-	40,749.2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0,749.2	-	40,749.2	100.0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40,749.2	40749.2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	증) 3,246.0	3,246.0	8.0	■ 기부채납 3,246.0㎡(8.0%)
	공 원	-	증) 3,246.0	3,246.0	8.0	
획 지	공동주택용지	-	증) 37,503.2	37,503.2	92.0	-

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안)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	소공원	가락동176번지	-	증) 3,246.0	3,246.0	-	조성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소공원	◦ 신설(증 3,246.0㎡)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공원 확보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계		-	-	10,541.48	
주민 공동 시설	계	1,000세대 이상 (500㎡ + 총세대수 x 2㎡) x 1.25	3,330.00이상	3,703.24	
	경로당	1,000~1,500세대 미만 (서울시 주택조례)	375.00이상	375.00	
	어린이놀이터	-	-	1,362.00	
	어린이집	1,000~1,500세대 미만 (서울시 주택조례)	580.00이상	580.24	
	주민운동시설	-	-	1,150.00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203.00이상	236.00	
관리사무소		10㎡ + (총세대수-50) x 0.05㎡	61.60	65.00	
경비실		-	-	40.00	
기계/전기실(지하)		-	-	1,130.00	
커뮤니티시설		-	-	1,000.00	
근린생활시설		-	-	900.00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500 + 1,082 × 2㎡) × 1.25 = 3,330.0㎡ 이상 < 3,703.24.0㎡ : 적합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안)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749.2	-	-	송파구 오금로 432 (가락동 176번지)	10	-	-	10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상한 (예정)		
신설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749.2	획지1 (공동주택 용지)	37,503.2	가락동 176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3.63% 이하	299.86% 이하	해발고도 175m이하 /최고3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3.7%

구분		세대수(세대)		세대 비율(%)	비고
		현황	계획		
합계		648	1,082	-	증) 434
60㎡이하	소계	-	487	45.0	
	45㎡	-	163	15.0	임대
	45㎡	-	2	0.2	분양
	59㎡	-	322	29.8	분양
85㎡이하	소계	384	419	38.7	
	72㎡	192	-	-	
	84㎡	192	419	38.7	분양
85㎡초과	소계	264	176	16.3	
	121㎡	264	-	-	
	122㎡	-	176	16.3	분양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8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 : 건축한계선 3m 지정. 단, 동남로 20길변 6m 지정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B=15m이상 - 기부채납시설(공원)과 대상지 동측 근린공원의 연결 ◦ 전면공지(차도부속형) : 오금로48길변 L=115m, B=3m - 오금로와 오금로48길 접속부 단지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차로 확보

바.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안)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4">산정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구역면적)</td><td colspan="2">택지(공동주택)</td><td>정비기반시설 등</td><td rowspan="2"></td></tr>
<tr><td>40,749.2㎡</td><td colspan="2">37,503.2㎡</td><td>3,246.0㎡</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4">토지 3,246.0㎡
순부담 면적 : 3,246.0㎡(8.0%)</td><td></td></tr>
<tr><td rowspan="4">개발가능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td><td>개발가능
용적률</td><td colspan="4">·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10% + 10% + 23.63% = 243.63%</td><td></td></tr>
<tr><td>허용
인센티브</td><td colspan="4"><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용적률</th><th>비고</th></tr><tr><td>합 계</td><td>10%</td><td></td></tr><tr><td>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인증 1등급</td><td>8%</td><td>-</td></tr><tr><td>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이하~15%초과)</td><td>2%</td><td>-</td></tr></table>※허용 인센티브(에너지효율인증/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td><td>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인센티브 항목 적용</td></tr>
<tr><td>기부채납
완화용적률</td><td colspan="4">·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1.3 × 0.08655)
= 23.63%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3,246.0㎡ ÷ 37,503.2㎡ = 0.08655</td><td></td></tr>
<tr><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4">243.63%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예정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4">299.86%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td><td></td></tr>
<tr><td colspan="2">소형주택건립용적률</td><td colspan="4">28.115% 이상
(299.86% - 243.63%) x 0.5</td><td></td></tr>
</table>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현황 : 648세대 계획 : 1,082세대 증) 434세대	

아.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안)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획지1	37,503.2㎡	1	163세대	45.00㎡	64.49㎡	(기준:10,544.02㎡이상) (계획:10,544.47㎡)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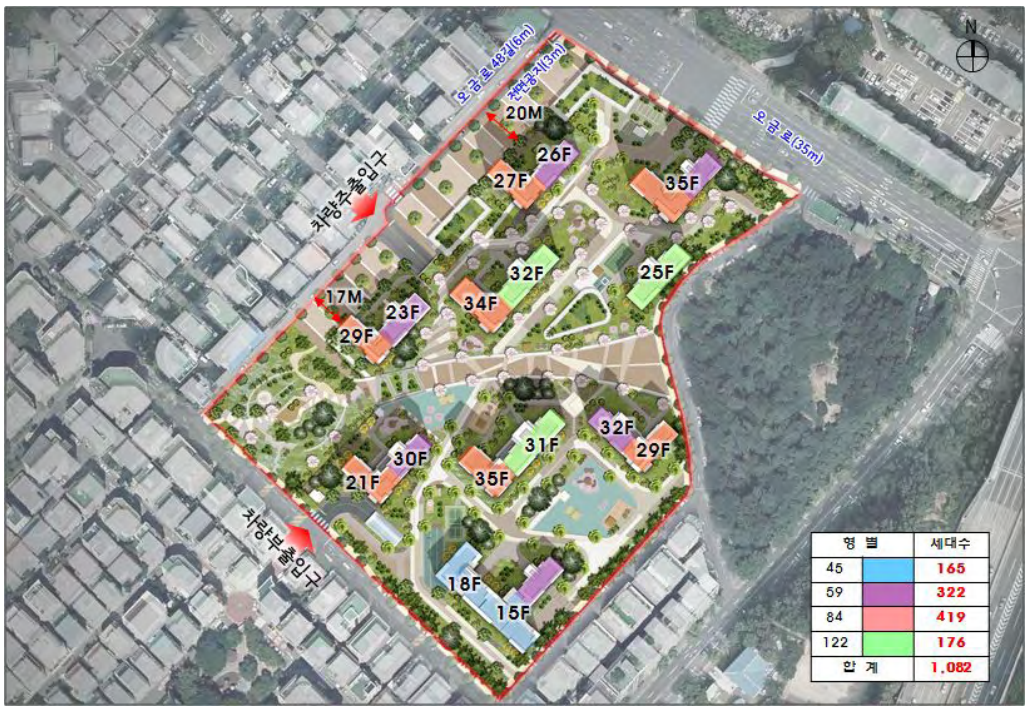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02-2147-2896) 및 삼환가락아파트 관리사무소(☏02-6486-8798), 가락2동 주민센터(☏02-2147-448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 임


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구역 결정도
범 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76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61대
160대
168대
168-1대
산78 공
185공
185-1 대
Scale = 1 : 1,500
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토지이용계획(안)도
범 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공동주택용지
공 원
176대
161대
160대
168대
168-1대
산78 공
185공
185-1 대
Scale = 1 : 1,500


N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휴게)
경비실
오금로
관리사무소/경로당
기타시설(지하)
주민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휴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광장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송남로20길


N
오금로48길(6m)
차량출입구(3m)
오금로(35m)
20M
26F
27F
35F
차량주출입구
32F
25F
17M
23F
34F
29F
32F
31F
29F
30F
21F
35F
차량부출입구
18F
15F
형 별
세대수
45
165
59
322
84
419
122
176
합 계
1,08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93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동남로 208(가락동 192번지)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한[송파구 공고 제2015-1711호(2015.12.10.)] 내용이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7.09.06.)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 09. 28. ~ 2017. 10. 3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896)
가락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02-403-7885)
가락2동 주민센터(☏02-2147-4480)

다. 공람사유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축배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사업시행인가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동남로18길 9 (가락동 192번지)	-	증) 40,111.5	40,111.5	

3. 정비사업의 계획(안)

가. 용도지역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111.5	-	40,111.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11.5	-	40,111.5	100.0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40,111.5	40,111.5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	증) 3,210.0	3,210.0	8.0	■ 기부채납 3,210.0㎡(8.0%)
	공 원	-	증) 3,210.0	3,210.0	8.0	
획 지	공동주택용지	-	증) 36,901.5	36,901.5	92.0	-

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안)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	소공원	가락동192번지	-	증) 3,210.0	3,210.0	-	조성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소공원	◦ 신설(증 3,210.0㎡)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공원 확보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계		-	-	5,420.0	
주민 공동 시설	계	1,000세대 이상 (500㎡ + 총세대수 x 2㎡) x 1.25	3,300.00이상	3,650.0	
	경로당	1,000~1,500세대 미만(서울시 주택조례)	375.00이상	450.0	
	어린이놀이터	-	-	1,200.0	
	어린이집	1,000~1,500세대 미만(서울시 주택조례)	580.00이상	600.0	
	주민운동시설	-	-	1,100.0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203.00이상	300.0	
관리사무소		10㎡ + (총세대수-50) x 0.05㎡	61.00	160.0	
경비실		-	-	50.0	
커뮤니티시설		-	-	1,560.0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500 + 1,070 × 2㎡) × 1.25 = 3,300.0㎡ 이상 < 3,650.0㎡ : 적합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안)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111.5	-	-	송파구 동남로 208 (가락동 192번지)	9	-	-	9	-	주거 (9동)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상한 (예정)		
신설	가락극동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111.5	획지1	36,901.5	송파구 동남로 208 (가락동 192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50 이하	243.75 이하	299.81 이하	152m 이하/ 3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6.9%

구분		세대수(세대)		세대 비율(%)	비고
		현황	계획		
합계		555	1,070	100.0	증) 515
60㎡이하	소계	105	550	51.4	
	45㎡	-	154	14.4	임대
	59㎡	105	396	37.0	분양
85㎡이하	소계	90	380	35.5	
	84㎡	90	380	35.5	분양
85㎡초과	소계	360	140	13.1	
	120㎡	210	-	-	분양
	124㎡	-	140	13.1	분양
	149㎡	150	-	-	분양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8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전체 건축한계선 6m (단, 공동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B=8m이상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및 통학로 확보 ◦ 동남로18길, 오금로44길변 주민공동시설 우선 배치

바.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안)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4">산정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구역면적)</td><td>택지(공동주택)</td><td colspan="2">정비기반시설 등</td><td rowspan="2"></td></tr>
<tr><td>40,111.5㎡</td><td>36,901.5㎡</td><td colspan="2">3,210.0㎡</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4">토지 3,210.0㎡
순부담 면적 : 3,210.0㎡(8.0%)</td><td></td></tr>
<tr><td rowspan="4">개발가능(정비계획)
용적률
산정</td><td>개발가능
용적률</td><td colspan="4">·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10% + 10% + 23.75% = 243.75%</td><td></td></tr>
<tr><td rowspan="4">허용
인센티브</td><td colspan="2">구분</td><td>인센티브 용적률</td><td>비고</td><td rowspan="4">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인센티브 항목 적용</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0%</td><td></td></tr>
<tr><td colspan="2">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인증 1등급</td><td>8%</td><td>-</td></tr>
<tr><td colspan="2">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이하~15%초과)</td><td>2%</td><td>-</td></tr>
<tr><td colspan="5">※ 허용 인센티브(에너지효율인증/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td></tr>
<tr><td>기부채납
완화용적률</td><td colspan="4">·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1.3 × 0.086988) = 23.75%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3,210.0㎡ ÷ 36,901.5㎡ = 0.086988</td><td></td></tr>
<tr><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4">243.75%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예정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4">299.81%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td><td></td></tr>
<tr><td colspan="2">소형주택건립용적률</td><td colspan="4">28.03% 이상
(299.81% - 243.75%) x 0.5</td><td></td></tr>
</table>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현황 : 555세대 계획 : 1,070세대 증) 515세대	

아.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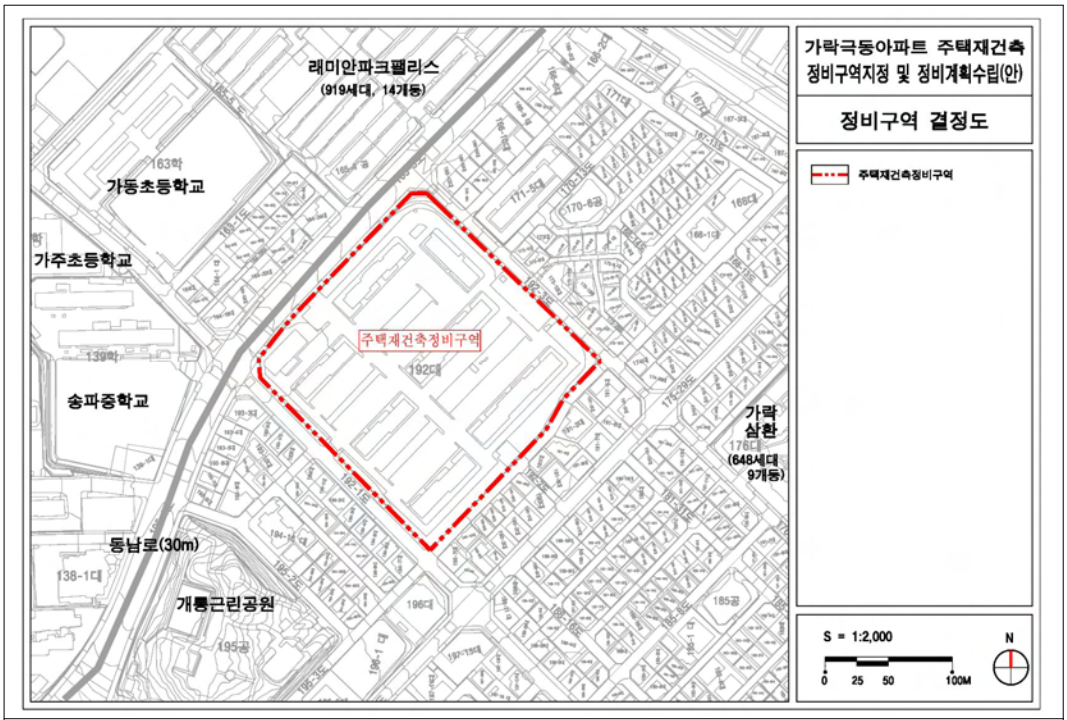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획지1	36,901.5㎡	1	154세대	45.00㎡	67.88㎡	(기준:10,343.5㎡이상) (계획:10,4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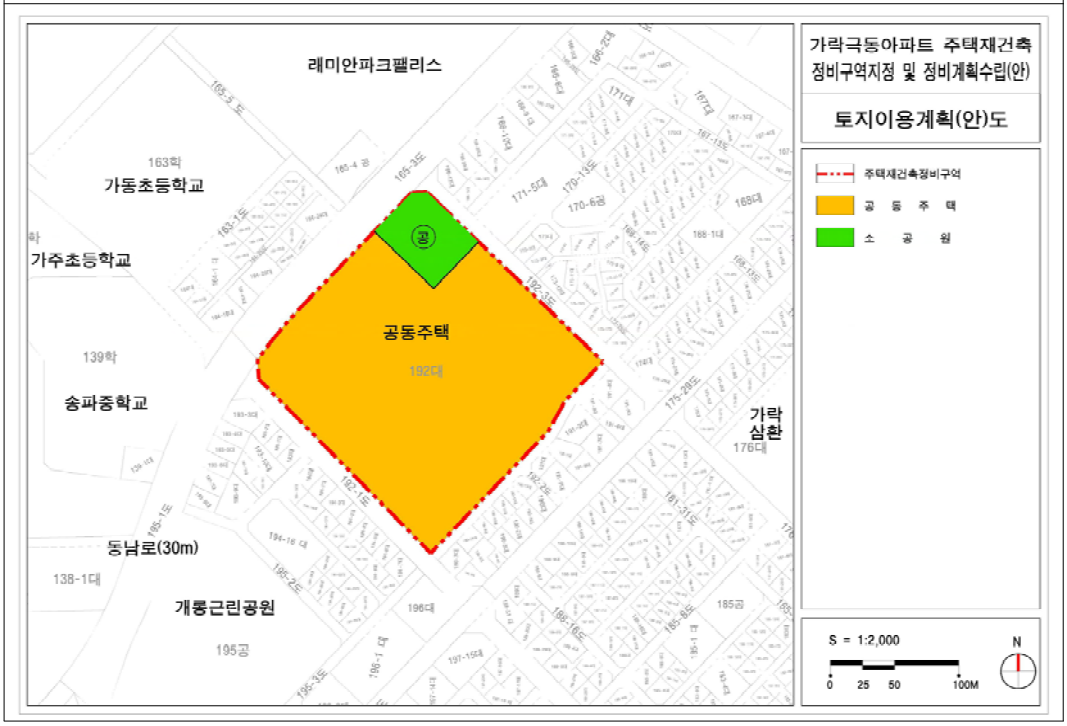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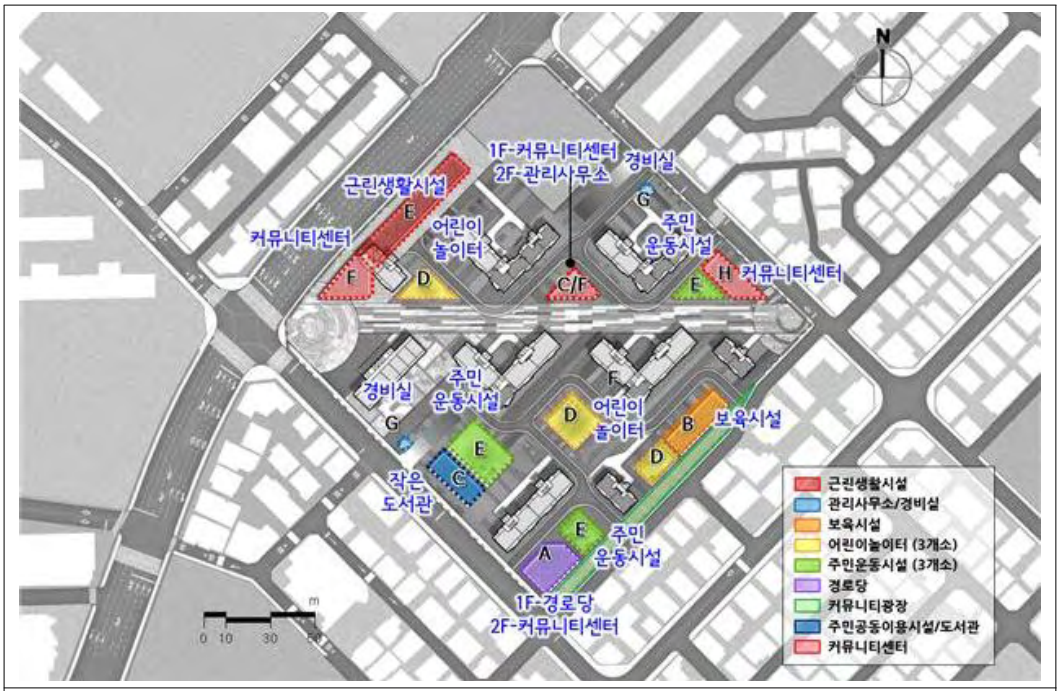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02-2147-2896) 및 가락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02-403-7885), 가락2동 주민센터(☎02-2147-448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 임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정비구역 결정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레미안파크팰리스
(919세대, 14개동)
163학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139학
송파중학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92대
가락
삼환
176대
(648세대
9개동)
동남로(30m)
138-1대
개롱근린공원
196대
185공
195공
S = 1:2,000
0 25 50 100M
N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토지이용계획(안)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공 동 주 택
소 공 원
레미안파크팰리스
163학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139학
송파중학교
공
공동주택
192대
가락
삼환
176대
동남로(30m)
138-1대
개롱근린공원
196대
185공
195공
S = 1:2,000
0 25 50 100M
N


N
1F-커뮤니티센터
2F-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E
어린이
놀이터
G
주민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F
D
C/F
E
H
커뮤니티센터
경비실
주민
운동시설
F
G
D
어린이
놀이터
B
보육시설
D
E
C
작은
도서관
E
주민
운동시설
A
1F-경로당
2F-커뮤니티센터
0 10 30 m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3개소)
주민운동시설 (3개소)
경로당
커뮤니티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도서관
커뮤니티센터


N
보행출입구
3개층 필로티
공원
차량부출입구
3F
35F
35F
28F
25F
25F
2F
2F
보행출입구
보행출입구
25F
30F
35F
35F
35F
25F
20F
20F
2F
보행출입구
보행출입구
2F
25F
25F
20F
차량주출입구
22F
2F
0 10 30 50 m
구 분
계획세대수
45㎡
154세대
59㎡
396세대
84㎡
380세대
102㎡
140세대
합 계
1070세대
※ 현황세대수 : 555세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95호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번지) 가락1차현대아파트에 대하여,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한[송파구 공고 제2015-1710호(2015. 12. 10.)]내용이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7. 09. 06.)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 09. 28. ~ 2017. 10. 3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896)
가락1차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02-408-2336)
문정1동 주민센터(☏02-2147-4510)

다. 공람사유 :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축배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사업시행인가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동남로 160 (문정동 3번지)	-	증) 33,953.7	33,953.7	

3. 정비사업의 계획(안)

가. 용도지역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3,953.7	-	33,953.7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3,953.7	-	33,953.7	100.0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3,953.7	33,953.7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	증) 1,230.5	1,230.5	3.6	■ 순부담 면적 1,689.4㎡(5.0%) - 공공청사 : 1,230.5㎡ - 건축물(부지환산) : 458.9㎡
	공공청사	-	증) 1,230.5	1,230.5	3.6	
획 지	소 계	-	증) 32,723.2	32,723.2	96.4	
	공동주택	-	증) 32,723.2	32,723.2	96.4	공동주택용지

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안)

1)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	증) 1,230.5	1,230.5		조성후 기부채납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1,230.5㎡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공·복지 서비스 강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공복합시설(어린이집, 주민센터) 건립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공동이용시설	계	-	2,859.38	6,320.36	
	관리사무소	10㎡ + (총세대수-50) x 0.05㎡	53.25	80.45	
	기타시설 (방재실,기계전기실)	-	-	481.41	
	다목적실(지하)	-	-	500.00	
	경비실	-	-	12.32	
	근린생활시설	-	-	2,310.00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총세대수 X 2.5㎡ X 1.25	2,859.38	3,293.87	
	경로당	500~1,000세대 미만(서울시 주택조례)	225.00	290.00	
	어린이놀이터	-	-	1,320.00	
	어린이집	500~1,000세대 미만(서울시 주택조례)	330.00	398.87	
	주민운동시설	-	-	1,060.00	
	작은도서관(지하)	500~1,000세대 미만(서울시 주택조례)	158.00	225.00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세대 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915 × 2.5㎡) × 1.25 = 2,859.38㎡ 이상 < 3,293.87㎡ : 적합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안)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3,953.7	-	-	송파구 동남로 160 (문정동 3번지)	12	-	-	12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신설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3,953.7	획지1	32,723.2	송파구 동남로 160 (문정동 3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4.09% 이하	299.20% 이하	해발고도 104.5m이하, /최고22층 이하	
			획지2	1,230.5		공공복합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7.0%

		세대수		비율(%)	비고
		현황	계획		
		514	915	100.0	증) 401
60㎡이하	44㎡형	-	159	17.4	임대
	59㎡형	-	143	15.6	분양
60~85㎡이하	84㎡형	228	403	44.0	분양
85㎡초과	102㎡형	-	210	23.0	분양
	123㎡형	286	-	-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동남로	공공보행통로에서 6m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송이로	공공보행통로에서 6m(근린생활시설 3m)	
동남로12길	경계선에서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B=3m이상(동남로, 송이로)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및 통학로 확보

바.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안)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4">산정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구역면적)</td><td>택지(공동주택)</td><td colspan="2">정비기반시설 등</td><td></td></tr>
<tr><td>33,953.7㎡</td><td>32,723.2㎡</td><td colspan="2">1,230.5㎡</td><td></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용적률산정)</td><td colspan="4">토지 1,230.5㎡, 건축물(토지환산) 458.90㎡
순부담 면적 : 1,689.40㎡ (5.0%)</td><td></td></tr>
<tr><td rowspan="6">개발가능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td><td>개발가능 용적률</td><td colspan="4">•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10% + 10% + 14.09% = 234.09%</td><td></td></tr>
<tr><td rowspan="5">허용 인센티브</td><td colspan="2">구분</td><td>인센티브 용적률</td><td>비고</td><td rowspan="5">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0%</td><td></td></tr>
<tr><td colspan="2">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td><td>8%</td><td></td></tr>
<tr><td colspan="2">신재생에너지 공급률(20%이하~15%초과)</td><td>2%</td><td></td></tr>
<tr><td colspan="4">※ 허용 인센티브(에너지효율인증/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td></tr>
<tr><td>기부채납 완화 용적률</td><td colspan="4">•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0% × (1.3 × 0.05163) = 14.09%
※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1,689.40㎡ / 32,723.2㎡ = 0.05163</td><td></td></tr>
<tr><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4">234.09%</td><td></td></tr>
<tr><td colspan="2">예정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4">299.20%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td><td></td></tr>
<tr><td colspan="2">소형주택 건립용적률</td><td colspan="4">32.56% 이상
(299.20% - 234.09%) × 0.5</td><td></td></tr>
</table>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현황 : 514세대 계획 : 915세대 증) 401세대	

아.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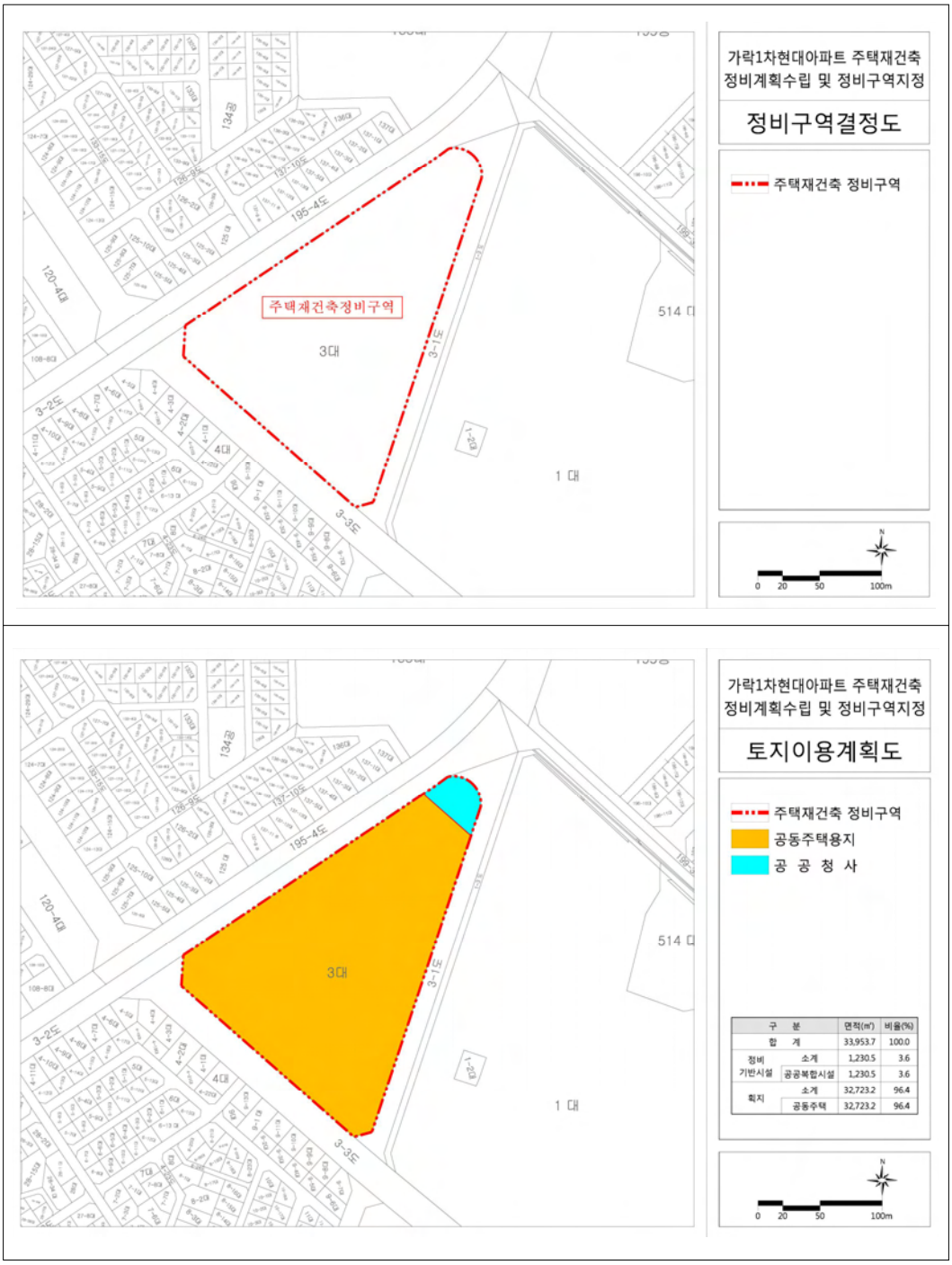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획지1	32,723.2㎡	2	159세대	44㎡	(기준:10,654.67㎡이상) (계획:10,65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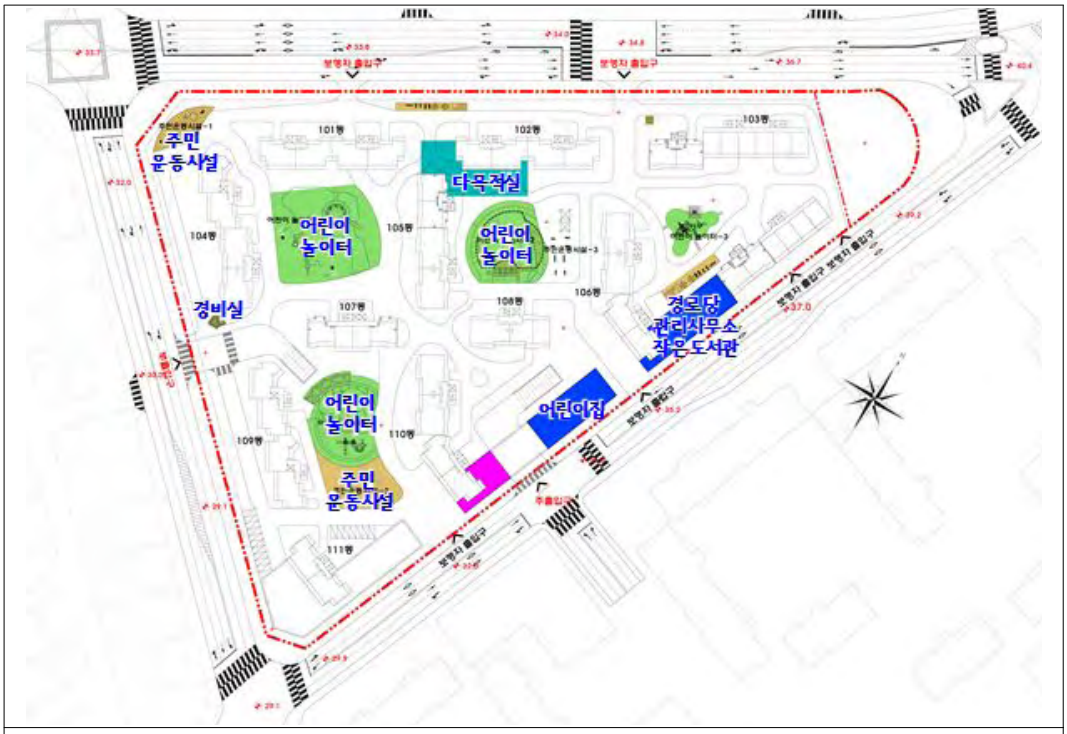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02-2147-2896) 및 가락1차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02-408-2336), 문정1동 주민센터(☎02-2147-451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 임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결정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대
1 대
514 대
134공
195-4도
120-4대
3-1도
3-2도
3-3도
4대
0 20 50 100m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토지이용계획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동주택용지
공 공 청 사
구 분 | 면적(㎡) | 비율(%)
합 계 | 33,953.7 |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 1,230.5 | 3.6
정비기반시설 공공복합시설 | 1,230.5 | 3.6
획지 소계 | 32,723.2 | 96.4
획지 공동주택 | 32,723.2 | 96.4


주민
운동시설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경비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공공
복합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 층수는 필로티 제외한 층수
구 분 계획세대수
44㎡ 159세대
59㎡ 143세대
84㎡ 403세대
102㎡ 210세대
합 계 915세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301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공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시 제2017-133호

2017.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개별주택가격 개요

○ 공시기준일 : 2017년 6월 1일

○ 개별주택수 : 24호

2. 주요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 개별주택가격

3.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송파구 홈페이지
(www. realtyprice. kr) (www. songpa. go. kr)

○ 방 문 :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4.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7년 9월 29일(금)부터 10월 30일(월)까지 송파구 홈페이지 (www. songpa. go. kr) 및 세무행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5. 시행일

이 공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시 제2017-134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개요

○ 공시기준일: 2012년 ~ 2017년(매년 1월 1일 기준)

○ 정정개별주택: 1호(가락동 120-20)

2. 주요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및 면적

○ 당초 가격 및 정정 개별주택가격

3.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

송파구청 세무행정과에 비치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내역

4. 이의신청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7년 9월 29일(금)부터 10월 30일(월)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 songpa. go. kr) 및 세무행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5. 시행일

이 공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